

M&A의 유형과 사례(2)

자바로 유명한 세계적 IT기업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오라클과 합병한다는 소식이 세계 IT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썬은 이미 IBM과 상당히 발전된 M&A 논의를 진행시키다 오라클로 방향을 선회하는 깜짝쇼를 보여주었고, 이에 오라클은 첫 1년간 영업이익 15억 달러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피플소프트와 BEA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체를 인수하며 성장해온 오라클은 서버기업인 썬을 인수하면서 SW/HW 모두를 망라하는 전방위 IT 기업으로 '단숨'에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다. 어떤 기업이든 M&A를 결정한 이후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과정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뤄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주식스왑을 중심으로 M&A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자. 아울러 또 다른 M&A의 유형인 주식의 포괄적교환과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고자 하자.

글_ 신기훈 회계사

_ 주식스왑 사례 1

구주와 신주의 교환 방식으로 현금이 동반되는 경우

코스닥등록법인 로커스홀딩스와 비상장 법인인 시네마서비스의 M&A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_ 로커스홀딩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400억 원을 차입하여 시네마서비스의 주요 주주의 주식 85,000주(지분 62.73%, 거래금액 398억)를 현금 지급하고, 시네마서비스의 주요 주주로부터 같은 금액 398억을 받아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이때 로커스홀딩스의 발행 주식은 2,688천주(지분 34.46%)를 시네마서비스의 주요 주주에게 발행한다. 그리고 이 때 발행한 주식대금으로 은행 차입을 상환하게 된다.

이 같이 로커스홀딩스가 현금을 통한 주식 발행을 한 이유는 주식 맞교환의 경우 법원의 인가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데, 로커스홀딩스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단 이를 만에 모든 것을 처리한다. 최대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_ 주식스왑 사례 2

구주와 옵션주(전환우선주)의 교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전환우선주와 CVR(Contingent Value Right)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으로, 전환 전에는 우선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 우선주로 배당에 참여 할 수 있다. CVR(Contingent Value Right)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가격(가치평가)에 대한 시각차가 발생한 경우 일단 최소 가격으로 하고, 매각되는 기업 혹은 사업부서의 향후 성과가 사전에 약속한 재무적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 추가적인 매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풋옵션을 의미한다.

사례_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례로, 2001년 코스닥상장법인 로커스홀딩스는 비상장법인 넷마블의 최대주주로부터 넷마블의 주식 378천주(지분 51%)를 인수하고 인수대가로 51억을 지불한다. 또한 로커스홀딩스는 전환우선주 61,691주를 발행하여 넷마블의 최대주주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로 51억 원을 회수한다. 전환우선주의 전환 시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4개월 후로 하였다.

이 사례는 현금이 동반되는 위의 사례와 절차나 방법상 별다른 차이는 없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협상 대상자 간에 협상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유용한 M&A의 유형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할 수 있는 회사(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교환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방법은 주식교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교환하는 두 가지 예외(간이교환 및 소규모 교환)를 두고 있다.

사례 2005년 코스닥 등록법인 국제정공(밸브 및 기계류 생산업체)과 비상장법인 라이프코드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M&A에 합의한다. 2005년 3월에 국제정공(완전모회사)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하고, 동년 4월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득한 후 2005년 4월 15일부터 2005년 5월 4일 까지 주식매수권 청구기간으로 하여 M&A를 한다.

포괄적 주식 교환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나, 현물출자일 경우 법원의 검사인 선임, 보고 등이 생략되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알아 두 세 요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금지되는 경우

- ① 채무초과인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의 경우
- ② 기존 모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의 경우
- ③ 완전자회사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주식교환에 대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주식교환의 날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완전모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 설립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법 제 8조)

그 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 190조의 2, 유가증권공시규정 제 91조)

간이주식교환 (상법 제 360조의 9) :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주식교환방법

- ① 완전자회사의 총주주의 동기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위의 경우에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기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